

1. 개정이유

「검찰청법」 폐지(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 및 「공소청법」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으로 '26. 10. 2.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설치·운영됨에 따라,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등 기관 명칭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반선박 등의 압수물 환부절차 관련 규정 정비(안 제4조 제3항)

위반선박 등의 압수물의 환부절차와 관련하여 규정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고, 준용 대상 규칙인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을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 정비

나. 위반선박 및 위반자 조치 등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8호서식, 제9호서식, 제10호서식, 제11호서식)

위반선박 및 위반자 조치, 담보금 결정 및 국고 귀속, 위반자 석방 등 업무에 사용되는 관련 서식에 기재된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등 서식 정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 법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을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지방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부 칙

위반선박 및 위반자조치서				
선박	①선박명			
	②허가·승인번호			
	③선적국			
	④선박의종류			
	⑤총톤수			
	⑥승선자	선장	(국적 :)	외명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선박 및 선장 기타 위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함				
○○○○공소청 검사 ⑨				
⑦정선·승선·검색일 시·장소				
⑧위반일시·장소 및 사실				
⑨위반사실 확인후 조치		()나포·억류 () 기타 조치		
⑩선박억류장소				
⑪위반자	직책	성명(국적)	생년월일	억류장소

(신문용지 54g/m²)

(기 관 명)		검 사 지 회	
제 호	년 월 일	년 월 일	
		가	부
		비고	
수 신	공소청		
제 목 위반선박및위반자조치지휘건의 베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선박 및 선장 기타 위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고자 하오니 지 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반 선 박	선박명및종류		
	선 적 국		
	총 톤 수		
	허가·승인번호		
위 반 자	직 책	성 명 (국 적)	생 년 월 일
위 반 사 실			
조치할사항			

(기 관 명)

사법경찰관

①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3호서식]

(기 관 명)				
수 신 공소청				
제 목 위반선박및위반자조치결과보고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선박 및 선장 기타 위반자에 대한 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선박	①선박명			
	②허가·승인번호			
	③선적국			
	④선박의종류			
	⑤총톤수			
	⑥승선자	선장	(국적 :)	외
⑦정선·승선·검색일				
사·장·소				
⑧위반일시·장소 및 사실				
⑨위반사실 확인 후 조치 ()나포·억류 () 기타 조치				
⑩선박억류장소				
⑪위반자	직책	성명(국적)	생년월일	억류장소
⑫급속을요한사유				
(기 관 명)				
사법경찰관 ㉠				
검사지휘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담보금결정서		
선박	①선박명	
	②허가·승인번호	
	③선적국	
	④선박의종류	
	⑤총톤수	
	⑥승선자	선장 (국적 :)외 명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위 선박의 선장 기타 위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담보금을 정함		
. . .		
○○○○공소청		
검사 ㉠		
⑦위반자	성명	(국적:)
	생년월일	
	억류장소	
⑧위반일시·장소및사실		
⑨담보금 원		
⑩비고		

※ 담보금의 납입에 갈음하여 보증보험증권첨부의 담보금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

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비고란에 기재하고 날인

210mm×297mm

(뒷 면)

안 내 문

1. 앞면에 기재된 담보금을 우리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담보금의 납입에 갈음하여 담보금보증서의 제출이 허가된 때에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담보금보증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담보금납입 또는 보증서 제출시 이 결정서를 우리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2. 담보금을 납입하실 경우 귀하를 석방하고, 위반선박 등을 환부할 것입니다.
3. 담보금은 귀하의 출석 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유발생시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 담보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가. 법원 또는 검사의 출석명령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나. 법원 또는 검사의 압수물제출명령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담보금이 국고에 귀속되기 전에 법원에서 선고한 벌금액을 납부하였거나, 귀하에 대하여 무죄·면소·공소기각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담보금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담보금의 납입 등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우리청 검사실
(전화 : , 담당자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8호서식]

○○○○공소청					
보 관 표					
①진행번호	제 호	②사건번호	제 호		
③주임검사		④위 반 자			
⑤납입금액	금	⑥납 입 인			
⑦종 류	담 보 금	⑧납 입			
⑨명 령 또는 통지연월일	⑩주임검사 인	⑪명 령	⑫출납공무원 또는취급주임	⑬지 불 액	⑭잔 액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

[별지 제9호서식]

○○○○공소청 (전화번호)		
집제 호		
수 신 (기관장)	발 신	공소청
제 목 위반자석방및위반선박등환부지휘	검 사	㉑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포·억류된 아래 위반자의 석방 및 위반선박 기타 압수물품의 환부를 지휘함		
위반선박	①선 박 명	
	②선 적 국	
	③선박용도	
	④총 톤 수	
⑤위 반 사 실		
⑥나 포·억 류 연 월 일		
⑦위 반 자	성 명	(. . . 생)
	국적및주소	
⑧환 부 물 품		
⑨석 방 및 환 부 사 유		
⑩비 고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0호서식]

담 보 금 국 고 귀 속 서		
위 반 자	①성 명	(. . . 생)
	②국 적	
	③승 선 선 박	(선적국 :)
	④위 반 사 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위반자에 대한 담보금이 아래와 같이 국고 귀속되었음		
. ○○○○공소청		
검사 ㉑		
⑤담 보 금	원	
⑥담보금보증보험증서		
⑦담보금국고귀속일		
⑧담보금국고귀속사유	() 검사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지정기일 불출석	
	() 법원의 출석명령을 받고도 지정기일 불출석	
	() 검사의 압수물제출명령 위반	
	() 법원의 압수물제출명령 위반	
	() 기타	

210mm×297mm

(신문용지 54g/㎡)

○○○○공소청

(전화번호)

수신

보증보험회사 대표이사

발신

공소청

제 목

담보금보증보험금지급청구

검 사

(인)

아래 담보금보증보험금에 대하여 . .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
금이 국고귀속되었으므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증 권 번 호		제 호	
보 험 계 약 자			피보험자
담보금납입 지시내용	사건번호		사 건 명
	위 반 자	(. . . 생, 국적:)	
	담 보 금 보증보험금	원	

붙 임 : 1. 담보금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2. 담보금국고귀속서 1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 (위반자의 석방 등) ① ~ ② (생략) ③ 검찰청에 수리되어 있는 압수 물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검찰 압수물사무규칙 제4장제5절 및 제5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위반자의 석방 등) ① ~ ② (생략) ③ 공소청 ----- -----공소청압수물 사무규칙----- -----.